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정관

제정	1980. 11. 03	개정	1981. 03. 01
개정	1981. 11. 21	개정	1983. 09. 28
개정	1986. 05. 19	개정	1986. 05. 19
개정	1986. 09. 30	개정	1988. . . .
개정	1992. 09. 01	개정	1994. 03. 03
개정	1996. 10. 24	개정	1997. 02. 21
개정	1997. 12. 31	개정	1998. 05. 01
개정	1999. 04. 15	개정	1999. 07. 05
개정	2000. 04. 06	개정	2000. 08. 30
개정	2000. 11. 24	개정	2001. 02. 21
개정	2002. 02. 22	개정	2002. 05. 13
개정	2002. 09. 10	개정	2003. 04. 03
개정	2004. 12. 15	개정	2005. 10. 17
개정	2005. 04. 11	개정	2006. 09. 07
개정	2008. 02. 18	개정	2009. 04. 29
개정	2009. 06. 25	개정	2009. 07. 14
개정	2010. 01. 12	개정	2012. 11. 16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04. 30
개정	2013. 09. 16	개정	2013. 11. 18
개정	2014. 02. 07	개정	2014. 03. 28
개정	2014. 12. 19	개정	2015. 04. 24
개정	2015. 07. 29	개정	2015. 10. 27
개정	2016. 01. 08	개정	2016. 04. 29
개정	2016. 08. 23	개정	2016. 12. 28
개정	2017. 02. 08	개정	2017. 06. 23
개정	2017. 08. 25	개정	2018. 02. 06
개정	2018. 02. 27	개정	2018. 04. 27
개정	2018. 06. 22	개정	2018. 08. 24
개정	2019. 06. 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올바른 인격과 민주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고 민족문화 창달과 인류공영 실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3. 11. 8>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경동대학교
2. <삭제 2012. 11. 16>
3. 경동대학교 부속유치원 <개정 2012. 11. 16>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3(태평로 2가)에 둔다. <개정 2014. 2. 7> <개정 2015. 4. 24> <개정 2016. 1. 8>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11. 18>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8> <개정 2009. 4. 29> <개정 2012. 12. 27>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2 (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회계년도 개시5일전에 예산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시대상 : 학교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예·결산내역
2. 공시방법 및 기간 :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제10조 (예산외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삭제 2006. 09. 07)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7인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1인 포함) <개정 2009. 4. 29> <개정 2009. 7. 14>
 감사 2인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②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서 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09. 4. 29>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하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 정수에 포함된다.

제20조의3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그 선임 대상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할 때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요청 받은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8. 2. 18> <개정 2013. 11. 18>

④ <삭제 2008. 2. 18>

⑤ <삭제 2008. 2. 18>

⑥ <삭제 2008. 2. 18>

제20조의4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경동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동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개정 2012. 11. 16>
2. <삭제 2012. 11. 16>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08.2.18>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며 이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 20조의3 (개방이사의 선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18>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이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며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개정 2009. 7. 14> <개정 2016. 1. 8>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 외에 이사 중 1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상근이사의 선임 및 임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 8>

④ 이사장의 보수 및 상근이사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7. 14> <개정 2016. 1. 8>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1. 18>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 2. 18>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1. 18> <개정 2018. 8. 24>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주요 규정의 제·개정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5. 4. 24>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와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와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가 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대학 홈페이지에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2. 27>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8>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8>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1조의3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경동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 11. 16>

제31조의4 (평의위원회의 구성)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하는 1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장이 위촉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5명
3. 학생 1명

제31조의5 (교내 평의원 위촉) 교원과 직원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고, 학생 평의원은 학생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3. 11. 18>

제31조의6 (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7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평의원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8 (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

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 한다. <개정 2013. 11. 18>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2. 18>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2. 18>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2. 18>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2. 18>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2. 18>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용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 2. 18>

제31조의9 (운영규정) 평의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금전신탁 및 주식투자 <개정 2009. 4. 29>
2. 부동산 개발 및 임대
3. 건설사업 <개정 2009. 4. 29>
4. 사회복지사업 <신설 2010. 1. 12>
5. 토지상의 육림, 조경, 과수 원예사업
6. 도서출판 및 판매
7. <신설 2018. 2. 6> <삭제 2018. 4. 27>
8. <개정 2018. 2. 6> <삭제 2018. 4. 27>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사업소를 경영한다.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학교법인 경동대학교의 사업소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소재지로 한다.

제35조 (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7>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경북대학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2. 12. 27>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7>

제5장의2 감 사 <신설 2010.10. 15>

제38조의2 (감사의 실시) ① 제25조에서 정하는 감사 이외에 이사장은 별도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각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로 구분한다.

③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1년 내지 3년의 범위 안에서 감사주기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부분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특정업무분야 및 교직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피감사기관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의3 (감사반 편성) ① 이사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마다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요원은 법인사무조직 및 각 학교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사무조직 및 각 학교 이외의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당해 기관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8>

제38조의4 (감사요원의 권한)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서류·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답변요구
3. 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계약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의 징구
6.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38조의5 (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요원은 감사결과를 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감사요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결과 징계·경고·주의·변상조치·시정·개선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30일 이내에 문서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6 (운영세칙) 감사 실시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 용 <개정 2018. 8. 24>

제39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8> <개정 2018. 8. 24>

대학교 총장 4년

<개정 2009. 4. 29> <삭제 2012. 11. 16>

유치원 원장 4년 <개정 2012. 11. 16>

②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8. 24>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7년 이내의 계약기간
다. 조교수 : 5년 이내의 계약기간

라. <삭제 2012. 5. 25>

2. 급여

정관 제48조의1의 규정에 따라 정함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학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석좌교수·강사·초빙교원·특임교수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 12. 27><개정 2019. 6. 21>

⑤ 대학교의 부총장 등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09. 4. 29> <개정 2012. 11. 16> <개정 2013. 11. 18>

⑥ 제1항,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4>

⑦ 제3항에 의한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⑧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 또는 임기 중 사임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사임한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22>

제39조의2 (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③ <삭제 2017. 2. 8>

제40조 (임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41조 (승진임용) 교원의 승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 (재계약)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 하며, 계약조건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을 아니 할 수도 있다.

1. 교원 자신이 학내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지도에 책임이 있는 교원이 그 지도를 태만하여 교내외에 학생소요 사태가 유발되어 3일 이상 많은 학생의 수업결손을 초래케 한 자

2.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교의 장 및 기타 조직체계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자

3. 직무내외를 막론하고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4.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정이 없는 자 또는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자

5.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과 법인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자

6. 교원임용 계약사항을 불성실히 이행한 자

7. 학교의 장의 승인 없이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단체를 교내에 조직하거나 또는 가입한 자

② 위의 각 호의 심의와 의결은 이사회의 기능으로 한다.

③ 심사결과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3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4>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13. 11. 18>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 기관에 고용 된 때
7.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11. 18>

제44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3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3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4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5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4>
- ③ 제43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6조 (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43조제1호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3조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4>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4>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8. 8 .2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4>

⑦ 제2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8>

⑧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⑨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징계의결 또는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면직을 보류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신설 2015. 4. 24>

제48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을 고려한 기본급에 성과급을 누적 합산하는 성과연봉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25><개정 2013. 11. 18>

제48조의2 (명예퇴직수당) ①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규정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교원 등의 특별승진 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및 교과과정의 개폐, 변경으로 인하여 기본 시수 미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8>

제50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원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4>
2. 제39조제3항의 대학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조건에 관한 기준 <개정 2015. 4. 24>
3. 대학교원에 대한 교육·연구 등에 관한 업적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42조제1항의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 2015. 4. 24>
5. <삭제 2015. 4. 24>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 (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 ③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4 관 징 계

제59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4>

1.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9조의2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 4. 24>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7. 6. 23> <개정 2017. 8. 25>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6. 23>
 - 1.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7. 6. 23>

-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3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할 것
- 2. 외부위원은 본 법인 또는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 3.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본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9조의3 (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3>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한 경우

제6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 (위원의 기피) ① 징계 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4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4>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4>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8> <개정 2018. 8. 24>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8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3. 11. 18> <개정 2015. 4. 24>

제69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70조 (운영세칙)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24>

제2절 사무직원 <개정 2015. 4. 24>

제71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자격 등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해당 자격증, 면허증 등을 취득한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2조 (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8> <개정 2016. 1.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 8>

④ <삭제 2017. 8. 25>

⑤ <삭제 2017. 8. 25>

⑥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속 직원과 학교 소속 직원간의 인사교류를 위한 전보발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3>

제72조의 2(계약직원의 임용) 계약직원의 임용, 임용기간, 자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8>

제73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

16. 1. 8>

제74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한 기본급에 성과급을 누적 합산하는 성과연봉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25> <개정 2016. 1. 8>

제75조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8>

제76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18> <개정 2016. 1. 8>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7조 (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직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78조 <삭제 2009. 4. 29>

제79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삭제 2016. 12. 28>

④ 대학교에 4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원(비전임교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09. 6. 25> <개정 2014. 2. 7> <개정 2017. 8. 25><개정 2018. 6. 22>

⑤ <삭제 2014. 2. 7>

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총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장 직무 대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3. 11. 18>

<개정 2014. 2. 7>

제80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해외취업본부·비서실·미래전략처·기획조정처·교무처·대학교육혁신원·학생복지처·입학처·산학취업처·대외협력홍보처·국제교육처·사무처·산학협력단·창업지원단·전산정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1. 16> <개정 2013. 11. 18> <개정 2014. 2. 7> <개정 2014. 3. 28> <개정 2014. 9. 17> <개정 2015. 4. 24> <개정 2015. 10. 27> <개정 2016. 4. 29> <개정 2016. 8. 23> <개정 2016. 12. 28> <개정 2017. 6. 23><개정

2018. 6. 22><개정 2018. 8. 24><개정 2019. 6. 21>

② 해외취업본부장, 비서실장 및 전산정보원장은 교원이나 직원으로 보하며, 미래전략처장·기획조정처장·교무처장·대학교육혁신원장·학생복지처장·입학처장·산학취업처장·대외협력홍보처장·국제교육처장·산학협력단장·창업지원단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2. 5. 25> <개정 2012. 11. 16> <개정 2013. 11. 18> <개정 2014. 2. 7> <개정 2014. 3. 28> <개정 2014. 9. 17> <개정 2015. 4. 24> <개정 2015. 10. 27> <개정 2016. 4. 29> <개정 2016. 8. 23> <개정 2016. 12. 28> <개정 2017. 6. 23><개정 2018. 6. 22> <개정 2018. 8. 24><개정 2019. 6. 21>

③ 제1항의 부서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부서를 둔다.<개정 2012. 11. 16>

④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실·팀(과) 및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각 업무는 제1항의 부서장이 각각 관장한다.<개정 2012. 11. 16> <개정 2013. 11. 18> <개정 2017. 6. 23>

⑤ 산하부서의 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2. 5. 25> <개정 2012. 11. 16> <개정 2013. 11. 18> <개정 2015. 4. 24>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 (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교육연수원, DMZ통일연구원, 보육교사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보건센터, 방송국, 편집국, 스포츠단, 예비군중대, 기숙사, 연구소, 출판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2. 7> <개정 2014. 9. 17> <개정 2014. 12. 19> <개정 2015. 10. 27>

② 부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장을 두며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4. 24>

③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24>

제82조 (도서관) ① 대학교에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4. 24>

③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도서관은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삭제 2012. 11. 16>

제4절 <삭제 2004. 12. 15>

제5절 유치원 <개정 2012. 11. 16>

제90조 (원장 등) ①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과 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유치원을 대표한다.

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 (하부조직) 유치원에 원무과를 두며 부서의 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

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24>

제6절 정 원

제92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 <개정 2015. 4. 24> <개정 2017. 6. 23>

제8장 (삭제 2004. 12. 15)

제9장 보 칙

제113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제11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15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주 소
이 사 장	전 재 욱	4 년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30-9
이 사	송 일 호	4 년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6-10
이 사	오 근 학	4 년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93-13
이 사	김 종 대	2 년	서울시 도봉구 미아3동 235-8
이 사	이 상 하	2 년	강원도 속초시 교동 657-20
감 사	장 기 재	2 년	서울시 종로구 청원동 산 4-25
감 사	이 상 집	1 년	강원도 춘천시 교동 25

부 칙(1980.11. 3)

(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3.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11.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3. 9.28)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8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1984학년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1986. 5.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6. 9.30)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

(시행일) 이 정관은 1988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9. 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잔여기간이 만료하여 재임용 시부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기간을 적용한다.

③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종전의 정관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 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4. 3. 3)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24)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2.2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동우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동우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4.15)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5)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6 대행81422-587)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30 대행81422-137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9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2000.11.24 대행81422-179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22 대재81422-219)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13 대재81422-660)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10 대재81422-117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신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4년

4. 전임강사 : 2년

③ (재직 중인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2001. 12. 31 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3. 4. 3 대재81422-504)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15 사학지원과-5867)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17 사립대학지원과-784)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11 사립대학지원과-2257)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7 사립대학지원과-51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제19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학교의 장은 제39조의2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8. 2. 18 사립대학지원과-843)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29 대학경영지원과-1962)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 정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인의 이사 정수는 제18조 개정에 불구하고 재임중인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제18조 개정 이사 정수와 동일시 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 6. 25)

(시행일) : 이 정관은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4 사립대학지원과-1451)

(시행일) : 이 정관은 200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1. 12 사립대학지원과-259)

(시행일) : 이 정관은 2010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5 사립대학지원과-6000)

(시행일) : 이 정관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25 사립대학제도과-409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39조, 제80조, 제86조의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1. 16 사립대학제도과-1077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이 승인하는 경동대학교와 동우대학의 통·폐합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동대학교와 동우대학의 통·폐합에 따른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관할청이 승인하는 경동대학교와 동우대학의 통·폐합일에 종전의 동우대학의 모든 교육용기본재산은 경동대학교에 편입된다.

③ (경동대학교와 동우대학의 통·폐합에 따른 승계) 개정 정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동우대학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경동대학교가 승계한다.

④ 개정 정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동우대학의 교비회계 등 회계 일체는 폐지·청산하지 않으며, 관할청이 승인하는 경동대학교와 동우대학의 통·폐합일에 경동대학교에서 승계한다.

⑤ (동우대학 폐지에 따른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관할청이 승인하는 경동대학교와 동우대학의 통·폐합일에 종전의 동우대학의 모든 교직원은 경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12.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16)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18)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7)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17)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9)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 8)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8)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6)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 3. 28> <개정 2015. 4. 24> <개정 2015. 10. 27>

법 인 직 원 정 원

계	13 명
(1) 국장	
(2) 부장	
(3) 과장	
(4) 팀장	13 명
(5) 계장	
(6) 주임	
(7) 직원	

2. <삭제 2014. 3. 28>

(별표 2) <개정 2012. 11. 16> <개정 2013. 4. 30> <개정 2014. 3. 28> <개정 2015. 4. 24>
<개정 2015. 10. 27> <개정 2017. 6. 23> <개정 2018. 2. 27>

대 학 교 직 원 정 원

계	140명
(1) 처장	
(2) 국장	
(3) 부장	
(4) 과장	140명
(5) 팀장	
(6) 계장	
(7) 주임	
(8) 직원	

2. <삭제 2015. 4. 24>

3. <삭제 2014. 3. 28>

(별표 3) <삭제 2012. 11. 16>

(별표 4) <개정 2012. 11. 16> <개정 2014. 3. 28> <개정 2015. 4. 24> <개정 2015. 10. 27>

유치원직원정원

계	10 명
(1) 계장	
	10 명
(2) 직원	
2. <삭제 2014. 3. 28>	
3. <삭제 2014. 3. 28>	